

무역구제

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, 조건 및 제한 (제10.1조 및 제10.2조)

□ 한·미 FTA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를 도입

■ 발동 요건

- ① 한·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
-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
-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일 경우

■ 조치 내용

- ①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
- ②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
 -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

■ 조치 기간

- 원칙적으로 2년 이하,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(총 3년 이하)

- 제도존속 기간
 - 협정 발효후 10년
 -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
- 기타 사항
 -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재발동 금지
 - 예상 조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점진적 자유화 실시

잠정조치 (제10.3조)

-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피해 등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“잠정조치”를 허용
 -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판정 이전에 최소 20일간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
 -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까지 가능

보상 (제10.4조)

-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 제공
-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 가능

참고: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미측 이행 조치

- ITC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(19 USC 2251-2252, 2254, 2436, 2451-2451a)에 대한 규칙(19 CFR Part 206)을 일부 수정 (2012.1.26)
 - ① NAFTA(1994) 이후 미국이 체결한 12개 FTA(한·미 FTA 포함)를 대상 FTA 리스트에 추가, ②대상품목에 한국 자동차 추가 등이 주요내용
- 추가적으로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2012.2.20자 서한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
 -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시, USTR이 한국측에 통보
 -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전, 한국측 요청시, USTR이 한국과 협의
 -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후 보상 관련, 한국측 요청시, USTR이 한국과 협의
 - 현행 USITC의 권한하에서, 예비판정전 최소 20일의 증거/의견제시 기간을 부여

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면제 (제10.5조)

- ▣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(WTO 차원에서의 긴급수입제한조치) 발동시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,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
- ▣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협정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

반덤핑/상계관세 조사개시전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(제10.7조제3항)

- 반덤핑/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,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를 부여
 - WTO 협정에는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한·미 FTA는 추가적으로 반덤핑 조사개시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
 - ※ 상계관세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 제13.1조에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의무 규정

반덤핑/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가격 또는 물량 약속 제도 활성화 (제10.7조4항)

- 반덤핑/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가격 약속 제안(상계관세의 경우 가격·물량 약속 제안 모두 포함)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 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,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
 - ※ 가격 또는 물량에 대한 약속 : 수출자의 가격인상 또는 수출물량제한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,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
 -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, 덤핑방기관세를 부과 받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

참고: 반덤핑/상계관세 관련 미측 이행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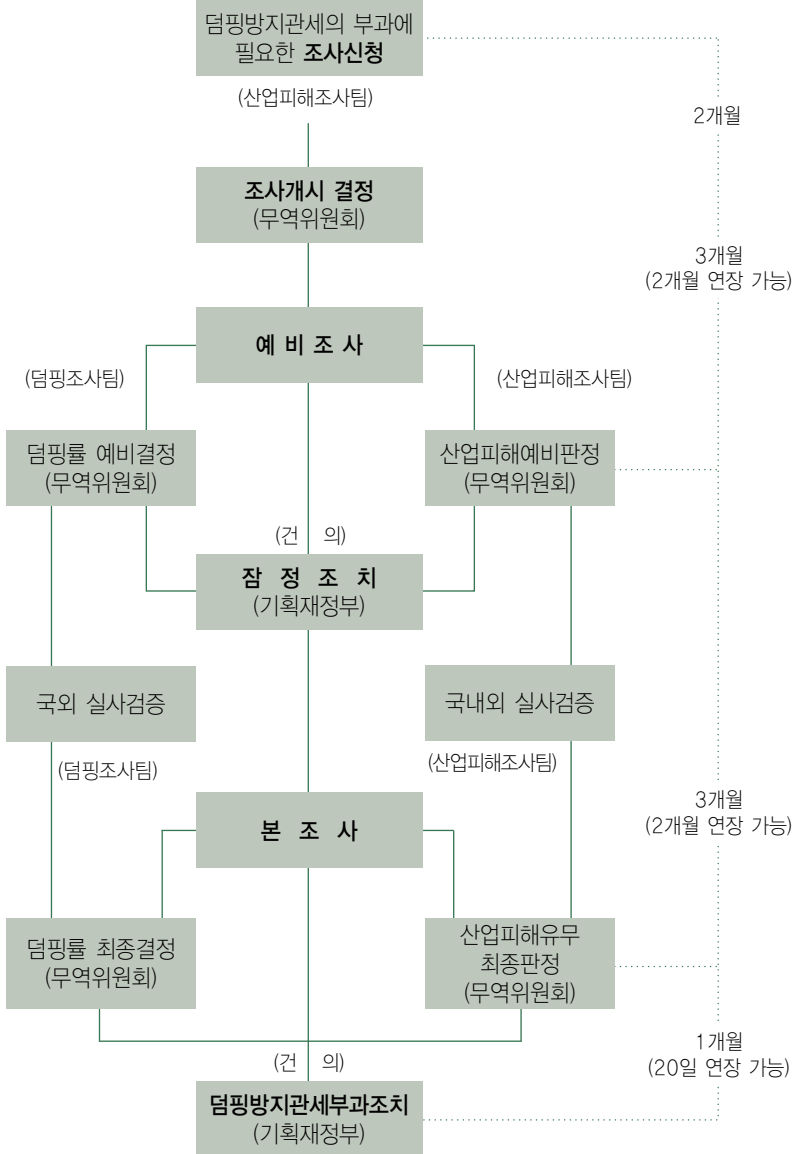
- 반덤핑 조사신청 접수 후 통보 규정
 - 19 USC 1673a(b)(3), 19 CFR 351 202(f) 및 19 CFR 351 208(f)
- 상계관세 조사개시 전 통보 규정과 가격 또는 물량 약속 제의 관련 절차 규정
 - 19 USC 1671a, 19 CFR 351 202(f), 19 CFR 203(i)(2) 및 19 CFR 351 208(f)

- 이와 별도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 의무를 명시한 상무부 수입청(Import Administration) 차관보(Assistant Secretary) 명의의 내부 공문(Notice)을 회람하고, 동 공문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협정 발효 직후 게재를 약속
 - 2012.3.15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문 게재

무역구제위원회 설치 (제10.8조)

- ▣ 양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, 반덤핑,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다루기로 함.
- ▣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
 - ①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
 - ②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/수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
 - ③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
 - ④ 양국의 반덤핑, 보조금 및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
 - ⑤ 무역구제 관련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감독
 - ⑥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(예: WTO 반덤핑 협상),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(예: 이용가능한 사실, 실사 절차),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
 - ※ 이용가능한 사실(facts available): 조사 기관이 피제조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,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
 - ※ 실사 절차(verification procedure):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,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 절차

참고 1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



참고 2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

